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5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3.7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1조,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기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의 제7조 교육명령에 관한 별점기준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규정

- 재검토기한은 '14.1.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규제영향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전화 : 042-481-4344, Fax : 042-472-327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안

제1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상인연합회의 설립기준을 정한
제13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교육명령에 관한 별점기준을 정
한 제7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u>상인연합회의 설립기준을 정한 제13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u>교육명령에 관한 별점기준을 정한 제7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